

□ **현황 및 문제점**

○ 외자유치·일자리창출 등 경제 육성, 교통·주택난 해결, 환경문제 해소, 복지 및 안전 확보 등 광역행정 수요 급증으로, 부지사 1-2 명으로는 정책결정과 조정업무를 감당할 수 없음.

⇒ **행정의 복잡화·전문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**

○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정수는 지방자치법(제110조)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자율적 정수확대 불가

⇒ **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한계**

- ◇ 특별시 부시장 정수 : 3명 이내
- ◇ 광역시, 특별자치시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 부지사 정수 : 2명 이내
(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지사 정수 : 3명 이내)
- ◇ 부지사 2~3명일 경우 : 1명은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

□ **개선방안**

○ 전문분야에 부단체장을 따로 임명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는 **“책임부지사”**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하여 **1~2명 확대**(지방자치법 제110조)

- 인구 200만 이상 시·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: 2명 증원

- 인구 200만 미만 시·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: 1명 증원

※ 미국, 유럽, 중국 : 약 5~10명의 부단체장을 둠(캘리포니아주 지방장관 11명 배치)

○ 부단체장을 2~3명 두는 경우 1명, 4~5명 두는 경우 2명을 정무직·일반직·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, **사무분장은 조례로** 정하도록 하여 **지역특성에 맞는 부단체장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담보**

□ **추진계획**

○ 전국시·도지사협의회 연계를 통한 중앙정부 건의 지속 추진

○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의원 입법발의(2015.9.10.)

- 노철래 의원 대표발의 등 27인 서명